<별지 제13호> <개정 2014.12.12., 2021.10.13.>

전환인가(전환예비인가) 신청서

전환 전 회 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	업무종류	
전환 후 회 사	상호	
	본점소재지	
	대표자	
	자기자본	
	업무종류	
전 환 개 요 (목적, 내용, 방법, 시기등)		

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전환(예비)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 서명 또는 인

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

■ 첨부서류

【타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자로의 전환】

<예비인가>
1. 정관변경(안) 1부
2.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1부
3. 업무개시 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서(주주 및 경영지배구조계획, 업무범위, 영업전략, 인력·조직운영계획, 구분관리에 관한 계획 등), 추정재무제표 및 예상수지계산서 각1부
4. 전환 후 추정 순자본비율·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
5. 대주주의 출자능력 및 재무상태 입증서류 1부
6. 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한 서면 1부
7. 본점·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
8.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및 재산목록 각1부
9.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
10. 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(명칭)과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1부
11. 전환 후 영위할 수 없는 업무의 정리계획서 1부
12. 추진일정 1부
13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<인 가>
1. 정관 1부
2. 전문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(경력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)각 1부
3. 전산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4.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 중 제3호 내지 제12호의 서류. 다만,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5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【금융투자업자의 타금융기관으로의 전환】

<예비인가>
1. 정관변경(안) 1부
2. 전환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1부
3. 최근 3개월간 일일영업상황 결산서,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및 부속명세서 각1부
4. 잔여 재산의 처리방법 및 이해관계자의 보호조치 등을 기재한 업무 정리계획서 1부
5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

<인 가>
1. 정관 1부
2. 전환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1부
3. 예비인가신청시 첨부서류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류 각1부. 다만, 예비인가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4.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